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생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김생환, 최정순, 김광수, 김정환
김제리, 이광성, 김태수, 송정빈
송명화, 김경영 의원(10명)

1. 제안 이유

현행 서울특별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에 대해 '위원 연임 기한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2년 임기의 경우 연임 3회로 6년까지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속사업의 추진 등 효율성 저하, 신규 위원 위촉시 전문가 확보 어려움, 위원회 활동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